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■ 구정 방향 ■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13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부록 제685호 2012. 4. 9.(월)

【고 시】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34호(도로명주소 고시) 1

【공 고】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290호(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) 2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변경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04. 09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75번길 12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-35	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75 번길 12	신축	2010-05-14	하모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 ~ 79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04. 09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2년 4월 5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 사용 불편 및 위변조등 비리방지 해소 필요
- 간단한 전자서명만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여 고령자.장애인.다문화가족등 정보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 부담 해소

2. 주요내용

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화(전자수입증지,전자서명)를 통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 제고
-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지방세 제증명서(5종) 기능 개선
 - 전자수입증지(3종) : 세목별과세증명서, 공직자동 과세증명서, 주택가격확인서
 - 전자서명(2종) : 납세증명서, 세목별과세증명서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. 4. 25 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(참조 : 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(법인명)과

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 115 (동춘동 923-5번지)

○ 연 락 처 : 전화 810-7170, FAX 810-7219

○ 홈페이지 : <http://www.yeonsu.go.kr/>

라. 제출서식

개 정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 3(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)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(이하 “지방세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<u>제5조의3(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사용)</u> <u>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</u> <u>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(이하 “지방세시스</u> <u>템” 이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</u> <u>게 할 수 있다.</u> <u>②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</u> <u>는 제6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</u> <u>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.</u>